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07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7.

발 의 자: 안민석·강민정·김병욱

도종환 • 문진석 • 민형배

서동용 • 유정주 • 이성만

장경태 · 전용기 · 전혜숙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·기간별 세부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,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·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, 해당 연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와 예산심사, 법적 제도 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시키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함(안 제20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세부시행계획에"를 "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"로 한다.

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 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국회 보고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, 해당 연도 세 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~	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
	전년도 세부시행계획에 따른
	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세부시	<u>⑥</u> 세부시
<u>행계획에</u> 필요한 사항은 대통	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
령령으로 정한다.	<u>적의 평가 등에</u>
	,
<u><신 설></u>	제20조의2(국회 보고) 문화체육관
	광부장관은 기본계획, 해당 연
	도 세부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
	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
	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
	하여야 한다.